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월 15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던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제10조 관련) 기간 연장
 - [별표2]의 2. 매입면제 대상에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

-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함.
(부칙안 제2호)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2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 (「지방세법」 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매입면제대상 가. ~ 아. (생략)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 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u>2015년12월31까지 15 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u> 차. ~ 카. (생략)	2. 매입면제대상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 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u>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 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 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감면시한은 「지 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 3항을 준용</u> 차. ~ 카. (현행과 같음)